# 업무위탁 계약서

삼성전자 주식회사(이하 "위탁자"라 한다)와 주식회사 원익홀딩스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는 다음과 같이 업무위탁 계약(이하 "본 계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-다 음-

## 제 1 조 (목적)

본 계약은 "위탁자"의 의뢰에 따라 "수탁자"가 화학물질관리법 제출 대상 설비의 P&ID 신규 작성 및 수정 업무(이하 "본건 용역"이라 한다)를 수행함에 있어서 "위탁자"와 "수탁자"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성실하게 본건 용역을 수행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## 제 2 조 (본건 용역의 범위)

본 계약에 따라 "수탁자"가 수행하여야 할 본건 용역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 "위탁업무 수행계획서"에 의한다.

- 1. 화학물질관리법 제출 대상 물질의 공급장치에 대하여 P&ID를 CAD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.
- 2. GCS 운영그룹에서 제시한 기호와 Spec.을 사용한다.
- 3. 전수 확인을 하고 작업 리스트를 작성한다.
- 4. 작성된 Cycle time 및 안전 SOP 를 준수한다.

#### 제 3 조 (본건 용역 수행 방법 및 결과물 검수)

- ① "수탁자"는 제 2 조의 본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, 그 착수, 진행상황 및 종료 사실 등에 관하여 수시로 또는 "위탁자"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"위탁자"에게 통보하여 "위탁자"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.
- ② 본 계약상 본건 용역과 관련한 업무, 각종 결과물 등에 대한 기획 및 진행은 "수탁자"가 하기로 한다.
- ③ "수탁자"는 본 계약에 따른 본건 용역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작하여 상호 합의한 기일 내에 상호 합의한 방식으로 "위탁자"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.
- ④ 전 항의 검수 결과 "수탁자"가 제출한 결과물이 별첨 "위탁업무 수행계획서"의 내용 또는 "위탁자"가 요청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하자가 발견된 경우 "위탁자"는 "수탁자"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"수탁자"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"위탁자"가 요구한 조치를 취한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.

# 제 4 조 (계약기간 및 세부일정)

- ① 본 계약의 기간은 2016 년 8월 1일부터 2016 년 11월 30일까지로 하며, 세부일정은 별첨 "위탁업무 수행계획서"에 의한다.
- ② 상기 기간 및 일정은 "위탁자"와 "수탁자"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다.





## 제 5 조 (대금지급)

"위탁자"는 "수탁자"에게 본 계약 수행에 따른 대가로 총 금일천구백육십구만일천육백칠원정(₩19,691,607/부가가치세 별도)을 "수탁자"의 최종 결과물 제출 및 "위탁자"의 승인 통지가 도달한 후 "수탁자"가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.

## 제 6 조 (결과물 귀속 및 제공된 자료의 관리와 반환)

- ① 본 계약 수행에 따라 발생한 결과물(P&ID, CAD 파일 원본, 작업리스트 등, 이하 "결과물"이라 한다)에 관한 일체의 권리(소유권, 지식재산권 등)는 "위탁자"에게 귀속된다.
- ② "수탁자"는 본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"위탁자"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제 3 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, 본 계약의 수행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.
- ③ "수탁자"는 본 계약의 수행을 완료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"위탁자"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 및 복사본을 "위탁자"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## 제 7 조 (보증 및 면책)

- ① "수탁자"는 본 계약에 의한 어떠한 결과도 제 3 자의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저작권, 프로그램저작권, 영업비밀을 포함하는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. 만일 "수탁자"가 제 3 자의 권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"위탁자"에게 통보하여야 하고, "수탁자"는 위제 3 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취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제 3 자가 향후 "위탁자"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서면 확약을 받아 "위탁자"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"수탁자"의 본건 용역 결과물에 관련되어 "위탁자"와 제 3 자 사이에 제 3 자의 특허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에 대해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할 경우 "수탁자"는 "수탁자"의 비용과 책임으로 "위탁자"를 방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"위탁자"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 "위탁자"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 단, "위탁자"는 위 분쟁이나 소송의 발생 및 진행 사항을 즉시 "수탁자"에게 알려야 한다.

## 제 8 조 (비밀유지)

- ① "수탁자"는 본 계약상 본건 용역에 관한 진행상황이나 내용 및 그 결과 등을 "위탁자"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공개, 유출,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"위탁자"와 "수탁자"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공개, 유출,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#### 제 9 조 (하자보수 등)

- ① "수탁자"가 납품한 모든 결과물에 대해 검수 완료 시로부터 1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, "위탁자"의 선택에 따라 "수탁자"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당 결과물을 재제작하거나 "위탁자"에게 제5조 제1항의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
- ② "수탁자"는 "수탁자"의 비용과 책임으로 하자보수 및 재발방지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③ "위탁자"는 "수탁자"가 제작한 결과물을 검사한 결과 규격에 미달되나, 납기 등불가피한 사유로 그 결과물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제 5 조 제 1 항의 대금에서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고 인수할 수 있다.

## 제 10 조 (계약의 해지 등)

- ① "위탁자" 또는 "수탁자" 양 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  - 1.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
  - 2.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영업면허, 영업등록 등의 취소처분을 받은 때
  - 3.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시작되거나 이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
  - 4. 가압류·가처분 등으로 본 계약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
- ② "위탁자" 또는 "수탁자"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14 일의 기간을 두고 위반 내용의 시정을 최고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.
- ③ "위탁자"는 "수탁자"가 다음에 해당될 경우,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.
  - 1. "위탁자"에게 허위의 사실 또는 거래내역을 통보한 경우
  - 2. "수탁자"가 본 계약 제 13 조에 의하여 "위탁자"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 본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인 수급업체에게 하도급함에 있어서, "위탁자"로부터 제 5 조의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업체에게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거나, 과도하게 "수탁자"의 이익으로 귀속시켜 수급업체가 "위탁자"에게 배상요청을 할 경우
  - 3. "위탁자"가 지정한 규격 이외의 자재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
  - 4.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건 용역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
  - 5. "수탁자"가 본 계약 제 8 조를 위반한 경우
- ④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양 당사자는 본건 용역 또는 결과물의 완성 정도에 따라 해지일까지의 대금을 정산하고, 해지일까지 발생한 결과물 및 본건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지식재산권은 "위탁자"에게 귀속한다. 단, 해지일까지의 결과물이 "위탁자"와 "수탁자"가 상호 합의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"위탁자"는 위결과물을 인수하지 않고 "수탁자"에게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⑤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# 제 11 조 (일정연기 및 지체상금)

① "수탁자"가 "위탁자"와 합의한 일정을 지체하거나 "위탁자"와 합의한 기한 내에 결과물을 "위탁자"에게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"수탁자"는 그 사유를 "위탁자"에게

통보하여 일정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, "위탁자"는 "수탁자"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. 단, "수탁자"의 제출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"위탁자"의 승낙이 "수탁자"의 이행지체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.

② "수탁자"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의 일정을 지체한 경우 "수탁자"는 지체일수 1 일당 총 대금의 1000분의 3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"위탁자"에게 지급하여야 하고, "위탁자"는 이를 "수탁자"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.

#### 제 12 조 (손해배상책임)

"위탁자"와 "수탁자"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또는 지연시킬 때에는 그 행위를 야기한 당사자는 그러한 불이행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, 그에 따른 일체의 손해를 배상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요구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## 제 13 조 (권리, 의무의 양도 금지)

"위탁자" 또는 "수탁자"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으며, "수탁자"는 "위탁자"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본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.

## 제 14 조 (계약의 수정 및 변경)

본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들이 기명 날인한 서면에 의해서만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.

#### 제 15 조 (불가항력에 의한 면책)

- ① "위탁자"와 "수탁자" 양 당사자는 화재, 홍수, 지진, 폭풍, 현생, 혁명, 정부의 규제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행지체 또는 불이행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.
- ② 전 항에 따라 본 계약의 수행이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"위탁자"와 "수탁자"는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#### 제 16 조 (관할법원)

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

#### 제 17 조 (존속조항)

본 계약의 제 6조 내지 제 9조는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되어도 유효하다.

#### 제 18 조 (기타)

- ①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간 합의로써 해결하고,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관례에 따른다.
- ② 본 계약 이전에 서면, 구두로 이루어진 본 계약과 관련한 합의사항들은 모두 무효이고, 본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만이 유효하며, 최종적으로 합의된 내용이다.

별첨 "위탁업무 수행계획서"

위와 같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"위탁자", "수탁자"는 본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각 기명날인한 후 각 1 부씩 보관한다.

2016 년 08 월 01 일

"위탁자" 삼성전자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(매탄동) 대표이사 권 오 현

"수탁자"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3. 칠괴길 78-40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3. 칠괴길 78-40 대표이사 이 재 헌

West .

15000100

# 위탁업무 수행계획서

# 1. 수량 및 리스트

<원익홀딩스>

| Gas명  | C4F6      | C5F8      | CL2     | HBR     | HCI | инз       | BF3     | 15. PH3. H2 | ACP02 | NO      | HF   | SAM24 | 10. PH3. N2 | CO | Precursor  |
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|
| CAB   | 51대       | 33대       | 2대      |         | -   | 1대        | 2대      | -           |       | 1대      | -    | /-    | 1대          | -  | -          |
| BUN   |           | -         | P /-    | 2대      | -   | -         | -       | -           | -     | 3대      | -    | -     | -           | -  | -          |
| BSGS  | -         | -    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| 9대        | -       | -           | - 1-  | -       | 1-1- | -     | -           | -  | -          |
| 신규    | 1대        | 1대        | 1대      | 1대      | 0대  | 2대        | 1대      | 0대          | 0대    | 2대      | 0대   | 0대    | 1대          | 0대 | 36대        |
| 중복    | 50대       | 32대       | 1대      | 1대      | 0대  | 8대        | 1대      | 0대          | 0대    | 2대      | 0대   | 0대    | 0대          | 0대 | 0대         |
| 라인중복  | 44대       | 29대       | 매       | 114     | 아내  | 4대        | 0대      | 0대          | 야내    | 0대      | 0대   | 0대    | 0대          | 0대 | 0대         |
| +요인   | 0대        | 0대        | 0대      | 2대      | 마   | 0대        | 0대      | 0대          | 0대    | 3대      | 0대   | 0대    | 0대          | 0대 | 0대         |
| 총 합   | 51대       | 33대       | 2대      | 2대      | 0대  | 10대       | 2대      | 0대          | 0대    | 4대      | 0대   | 0대    | 1대          | 0대 | 36대        |
| 총 금액  | 6,386,727 | 4,115,829 | 325,298 | 271,190 | -   | 1,445,602 | 325,298 | - 1         | -     | 626,494 | -    | -     | 167,437     | -  | 6,027,732  |
| Total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| 19,691,607 |



# 2. P&ID 도면 금액 산정

① 신규, 중복으로 나눈다.

1) 신규 : 같은 Option의 GAS별 최초 장비, 라인별 최초 장비 적용.

2) 중복 : 같은 GAS의 장비 중 Line이 같고, Option이 같은 경우 적용.

② 옵션사항 부가. (+ 옵션, -옵션)

1) + 옵션 : Bundle일 경우.

2) - 옵션: 같은 라인이어서 동선이 적을 때 적용시킴.

3 Cycle time

X

Cycle Time.xlsx